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4.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3. 4.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일반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210명에서 1,225명으로 15명 증원함. (안 제2조)
(총정원은 1,236명에서 1,251명으로 15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승인이 2003. 3.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36명에서 1,251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인력재배치로 자체 승진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직원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증원되는 15명은 외교통상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3주 이상의 교육을 계획중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증원되는 인원의 총원 방법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기능직 6명은 외교통상부에서 총원하며, 일반직 9명은 자체 총원함.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신규채용 계획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9급 24명을 요구 중에 있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외국어 활용가능 또는 전산자격 증 소지자 및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선발대상자는 있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외국어 전공자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며, 전산팀 지원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3.04.0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일반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사무인 여권발급업무에 필요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충수를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210명에서 1,225명으로 15명 증원함.(안 제2조)

(총정원은 1,236명에서 1,251명으로 15명 증원)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8.14 대통령령 제 17707호) 제21조
- (3) 행정자치부 자재12200 - 111(2003.2.25)호 및 서울특별시 조직 12200-334(2003.3.3)호에 의거 정원승인 통보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3.31)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1,236명”을 “1,2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210명”을 “1,22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236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10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 <u>1,251명</u>-----</p> <p>-----</p> <p>1. ----- <u>1,225명</u></p> <p>2. (현행과 같음)</p>